제17-0778호

안 전 인 증 서

하이젠모터(주)

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3번길57 (성산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삼상유도전동기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 · 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E315P2-06	350 kW, 2 P, 3300 V, 60 Hz, F종 , S1 Duty Ex e II T3	17-GA2BO-0778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)

인 증 조 건

Tamb : -20 ℃ ~ +40 ℃, 뒷면 인증조건 참조

2017 년 12 월 07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